

2021년도 제2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2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1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280건(안건번호 제2021-107655호~1091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07655호, 107656호(순번 1번~2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07657호~107659호(순번 3번~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27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4쪽의 저작물명, 5쪽, 6쪽의 OSP명, 저작물명, 게시물명, 7쪽의 메일 내용, 8쪽의 OSP명, 저작물명, 10쪽의 게시판명, 13쪽의 저작물명, 저작물 회차, 워터마크 내용, 게시자명, 14쪽의 게시자명, 게시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 6쪽의 일부 문구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의결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할 것으로 생각됨. 그 외의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A,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OSP명, 게시물명, 메일 내용, 게시판명, 저작물 회차, 워터마크 내용, 게시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7쪽~2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된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공개글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B,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5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유료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3건임.
(순번 4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3화를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으로,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4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6번~147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27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번은 블로그에서 음악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를 mp3 파일로 전송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6. 29.에 발매한 국내 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블로그 내에 광고 배너 게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블로그 운영자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 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 3'를 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0. 9. 25.에 출시한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 판

매 사이트 'STEAM'에서 20,500원에 판매중임.

(방송 '엠 카운트다운(M Countdown)'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5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엠 카운트다운(M Countdown)'를 38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1. 8. 12.에 방영한 720화로, 전체 분량인 약 68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Mnet에서 2004. 7. 22.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2,200원에 대여중이고, TVING 등 OTT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영화 '키싱 부스 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65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키싱 부스 3'를 195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13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 2021. 8. 11.에 공개된 영국 코미디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6번~1470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147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7655호~109124호(순번 1번~1470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 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